

고 성 군 건 축 조 례 증 개 정 조 례 안

(의안번호 제722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1. 11. 26

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1. 11. 28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01. 12. 11

총무위원회 상정 · 의결

2. 제안이유

- 건축법시행령 개정(2001.9.15. 대통령령 제14,903호) 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, 현행 조례에 규정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골자

- 가.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의 설치 등으로 법령 등에 부적합할 경우 건축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함.(안 제5조)
- 나.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안에서의 가설건축물 중 주거환경 등에 악영향을 미치는 간이축사 등의 설치를 금지함.(안 제8조)
- 다. 도시계획구역 밖의 건폐율을 준농림지역 40%, 자연환경보전지역 40%, 기타지역 60%로 정함.(안 제21조)
- 라. 도시계획구역 밖의 용적율을 준도시지역 200%(개발계획 미수립지역 80%), 준농림지역 80%, 자연환경보전지역 80%, 기타지역 200%로 정함.(안 제23조)
- 마. 공동주택의 일조권 확보를 위한 띄어야 할 거리중 동일한 대지안의 측벽과 측벽 간의 거리를 6미터에서 4미터로 완화함.(안 제29조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인 건축법시행령이 2001.9.15 개정됨에 따라 동시행령에서 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, 또한 현행 동 조례에 규정된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,
- 다만, 건폐율 및 용적율이 우리군 지역실정에 맞게 적용되었는지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용적율과 건폐율 적용이 우리 군 지역실정에 맞게 책정되었다고 보는지
- 답 : 국토이용관리법, 도시계획법, 건축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방안으로 적용하였음.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- 2001. 12. 11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